

[국민참여개헌기구 설치를 위한 국민청원 신청서]

수신 :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외 정부

참조 :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,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,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

관련근거 : 헌법 제26조와 청원법 제3조, 제4조, 제6조

가. 목적

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질 제 10차 개헌안을 국민참여개헌으로 만들고자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서 국민참여개헌기구 설치를 청원합니다. 이를 위해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나. 이유

- (1) 국민참여개헌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자 완성체입니다. 그러므로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는 국민참여개헌을 위한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 ‘나라다운 나라, 대한민국’ 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(2) 대한민국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12일에 국회에서의 연설로 국민참여개헌을 약속하셨습니다.
- (3) 대한민국 국회는 2017년 1월 3일에 국회 제1기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공식으로 출범시키고 1년 가까이 활동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지 못했고, 제2기 헌법개정&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출범에 앞서 당리당략에 의한 파열음을 내고 있어 국민참여개헌을 난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
- (4) 국회에서 각 정당 간에 정치협상으로 만들어지는 헌법개정은 헌법의 제정권자이자 개정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할 우려가 짙습니다. 특히 정당개혁과 선거법 관련 헌법조문을 만드는 데 있어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.
- (5)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참여개헌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, 상당한 성과를 구축했습니다. 이제는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 국민참여개헌기구를 설치하여 제10차 헌법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 보고, 국민참여개헌기구설치를 청원합니다.

